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0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6	엄태영의원 등 10인	'25.3.2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40	송기현의원 등 11인	'25.9.0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인증”을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으로 한다.

제3장의3에 제35조의13부터 제35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합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

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

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 자동차등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우

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성능평가대행자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5조의14제1항”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7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

제79조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5의6.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

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환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의7. (현행과 같음)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u><신 설></u>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
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
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
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합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
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
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
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
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

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
제조 등급을 재사용 · 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
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
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
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
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 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

<신 설>

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 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유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

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

<신 설>

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
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
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
통전 안전검사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

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 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p>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3. ~ 9.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72조(보고 ·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p>	<p>-----</p> <p>-----.</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u></p> <p><u>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u></p> <p>3.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2조(보고 · 검사) ① -----</p> <p>-----</p> <p>-----</p> <p>-----</p> <p>-----</p> <p>-----</p> <p>-----</p>

<p>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 -----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 ----- ----- ----- ----- ----- ----- ----- ----- -----.</p>
<p>1. ~ 6.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u></p>
<p>④ ~ ⑥ (생 략)</p>	<p><u>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u></p>
<p>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u>제45조의3제1항</u>, 제47조제5항 및</p>	<p>제75조(청문) ----- ----- ----- ----- -----.</p>
	<p>1. ----- <u>제35조의14제2항</u>, <u>제45조의3제1항</u>--</p>

<p>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7) ~ (12) (생 략)</p> <p>제77조의2(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u>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u></p> <p>(7) ~ (12) (현행과 같음)</p>
<p>1. ~ 3의4. (생 략)</p> <p><u><신 설></u></p>	<p>제77조의2(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p> <p>-----</p> <p>-----</p> <p>-----.</p>
<p>4. ~ 9. (생 략)</p> <p>제79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의4. (현행과 같음)</p> <p><u>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 평가 대행업무</u></p>
<p>1. ~ 5의4. (생 략)</p> <p><u><신 설></u></p>	<p><u>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u></p> <p>4. ~ 9. (현행과 같음)</p>
<p>4. ~ 9. (생 략)</p> <p>제79조(별 칙) -----</p> <p>-----</p> <p>-----</p> <p>-----.</p>	<p>제79조(별 칙) -----</p> <p>-----</p> <p>-----</p> <p>-----.</p>
<p>1. ~ 5의4. (생 략)</p> <p><u><신 설></u></p>	<p>1. ~ 5의4. (현행과 같음)</p> <p><u>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u></p>

<신 설>

6. ~ 19. (생 약)

제81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0의8. (생 약)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의6.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6. ~ 19. (현행과 같음)

제81조(별 칙) -----

-----.

1. ~ 20의8. (현행과 같음)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
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u>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u>
21. ~ 28.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생 략) <u><신 설></u>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u>
9. ~ 11.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 11. (현행과 같음) ④ ----- ----- -----.
1. ~ 15의3. (생 략) <u><신 설></u>	1. ~ 15의3. (현행과 같음) <u>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u>
<u>15의4. · 15의5. (생 략)</u>	<u>15의5. · 15의6. (현행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와 같음)</u>
16. ~ 24. (생 략) ⑤ · ⑥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